

회원투고

## 골프장 개발을 위한 입지 관련 규제 -자연환경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sup>1)</sup>

권영한<sup>2)</sup>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서론

골프는 아직 대중화가 안된 레저운동이지만 최근 골프를 즐기는 인구수가 늘어 골프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은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등록 신고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국 체육시설 면적 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시설이다(문화관광부, 2002). 골프장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계획 중인 골프장도 시·군의 산림면적 대비 골프장 면적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토지는 산지가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경지 개발이 제한되어 골프장 입지로서 산지를 선택해 왔다. 그러나 국내의 지형특성상 산지에서 골프장 공사는 과도한 지형훼손을 유발하며 육상생태계의 훼손뿐 아니라 육수생태계에도 피할 수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권 등, 2002, 2003).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에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들 중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조성시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제도적 틀에서 분석하고, 여타 행정적인 절차들과 비교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의 절차상 소요되는 시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골프장은 현재 크게 3가지 법에 의해서 설치될 수 있는데,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를 하고, 이후 사업계획 승인시 사업계획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골프장 설치에 대한 단계만 분석한

1)Regulatory Processes Regarding a Siting for Golf Course Development - Problem and Improvement Focused on Natural Environment -

2)KWON, Young-H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vis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E-mail: yhkwon@ke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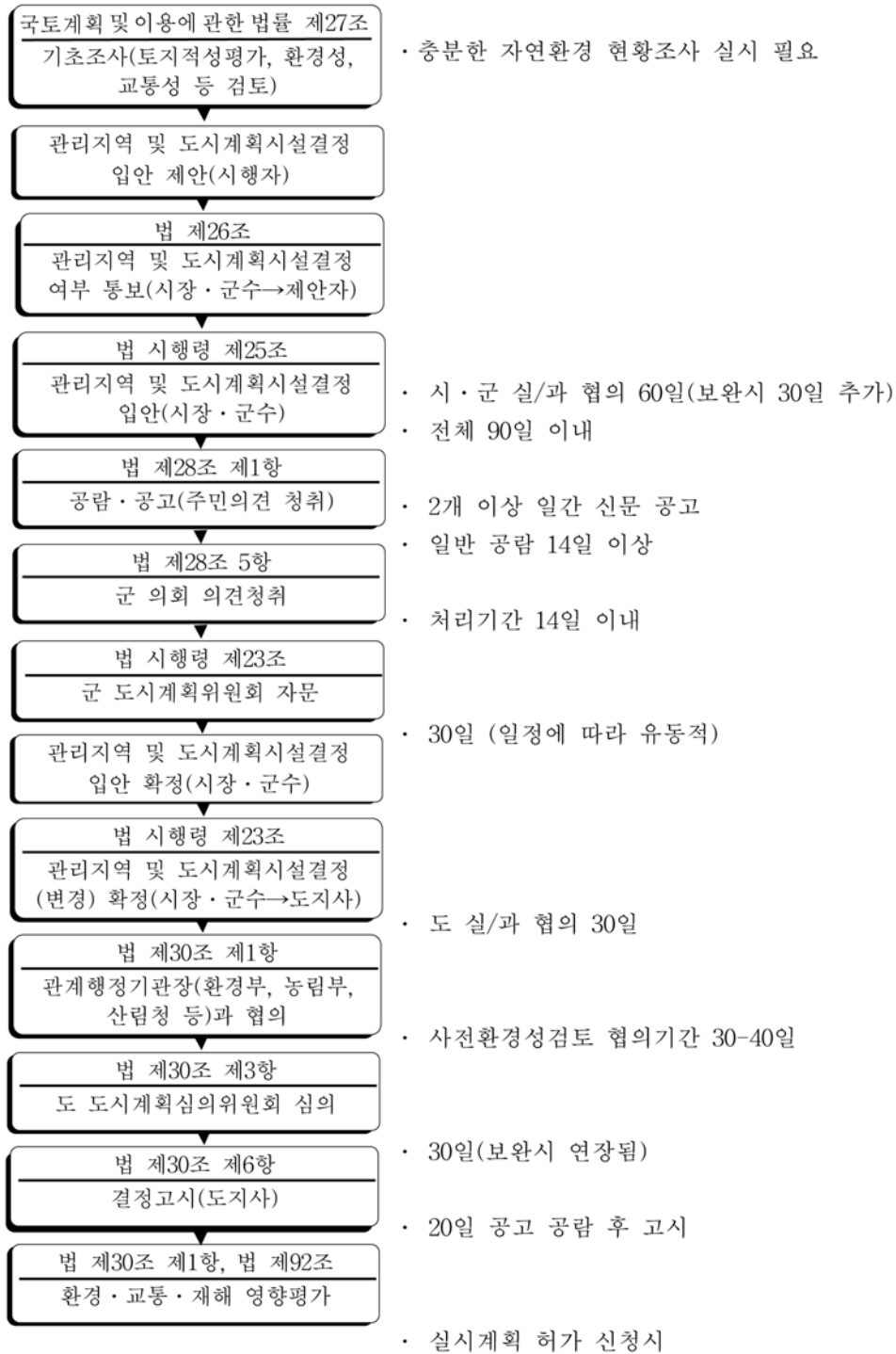


그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에 따라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 입지관련 행정절차.

다.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그림 1과 표 1에 나타나 있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등록체육시설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상에는 기반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체육시설은 국토계획법의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따라서 골프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9홀 이상 골프장과 관광휴양시설 등 복합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하다.

그림 1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60일 정도이며 그 중 사전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30~40일로서 전체 절차의 약 1/8에 해당된다. 그러나 행정절차에서 보완이 요구될 경우 소요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보통이다. 골프장의 입안과정과 승인과정의 중복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최소 180일 이상이 소요된다. 골프장 입지가 결정 고시되면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법 제30조 1항에 근거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시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거친 후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표 1에 의하면 동법에 의하여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240일 정도이며 그 중 사전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30일로서 전체 절차의 약 1/8에 해당된다. 각 절차에서 보완이 요구되면 소요시간이 추가된다. 시·군·구와 시·도 관련 사항이 절차상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사업자가 서류를 준비할 때 입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골프장 입지가 결정 고시되면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관련부처의 협의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

표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 입지관련 행정절차\*

내용	소요기간
-사업자 준비사항 ·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현황 측량 및 입목조사 30일 · 도서작성 30일	60일
-시/군/구 관련사항 · 해당부서 검토 30일 · 측량협회 검증 15일 · 실과 협의 15일 · 공람공고 30일 · 시의회 의견 청취 15일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0일 (일정에 따라 유동적)	135일
-시/도 관련사항 · 해당부서 검토 30일 · 실과 협의 15일 · <b>관련부처 협의 30일(사전환경성 검토)</b>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0일 · 경기도 의회 승인 20일	125일
-건설교통부 관련사항 · 해당부서 검토 30일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존사례 : 150일 보완) ·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승인	180일 이상 매년 말까지
-결정·고시	-
-결정·고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환경·교통·재해 등 환경영향평가 수행	-
총 일수	240일

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상기의 두 사례와 같이 골프장은 입지별로 관련법에 의거 조성될 수 있는데 적절한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인·허가 절차는 서로 상이하지만 특정 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환경부(청)의 장과 골프장 입지의 환경관련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변경에 의해 골프장을 조성할 경우 변경이 결정되는데 최소 약 260일(8.5개월) 정도 소요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에 의해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변경이 결정되는데 약 240일(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자료의 보완 등에 따라 추가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 골프장 설치지 입지관련 행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골프장 입지선정의 현황

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는 입지 또는 부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지가 산지일 경우 자연환경이 중점 검토대상이 된다. 골프장 조성의 특성상 기존의 자연환경과 이질적인 토양과 식물이 유입되어 자연환경에 미치는 훼손과 교란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잔디와 식재된 식물을 주변의 자연식생과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상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마치 눈에 벼를 재배하는 것 같이 골프코스에서 잔디만을 키워야 하므로 발생하는 오염의 영향이 지속적이며 누적적일 것이다. 때문에 적절한 골프장의 부지는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흡수하고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골프장의 입지선정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중요하다.

골프장 입지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

어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지역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이고, 둘째는 모호한 규정 또는 기준으로 인하여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백두대간 등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골프장의 입지가 법으로 규제된 지역 등이다. 통상 둘째의 경우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경우 입지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할 자연환경적 중점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골프장이 조성되더라도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기존에 자연환경이 교란된 목장, 농경지, 석산 또는 광산 개발지 등 나대지, 생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염전, 기타 생태계가 집중적으로 교란된 지역 등을 포함하는 부지가 적절하다. 둘째, 식생이 존재하더라도 오랫동안 교란된 지역 즉 묵밭, 초지, 식재림으로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 부지로서 적절하다.

#### 골프장 입지선정의 문제점

그림 1과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중복되는 과정들이 존재한다. 검토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단계에서 중복절차는 골프장 설치의 계획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가로 요구하는 원인이다.

관련부처 협의 중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입지의 환경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나, 입지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환경의 현황 및 영향을 작성하는 세부 기준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입지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이 사전환경성 검토의 중요한 목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 규정은 모호한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의 입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서의 작성기준이 모호하여 사업자와 협의권자 사이에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현재 사업자는 입지와 관련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으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다만 협의권자와 전문검토자는 환경부에서 발간된 사전환경성 검토편람을 참고로 하여 입지의 적절성에 대해 판단 기준을 삼고 있다. 그러나 동 편람의 내용은 자연환경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으나 법에서 정한 규정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아니었다.

**골프장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최근에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골프장 규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사전환경성 검토기준과 관련된 불명확한 규제를 객관적으로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국무조정실, 2004). 아래의 내용들은 사전환경성 검토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구체적으로 고려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절차의 간소화

골프장 설치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림 1과 표 1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입안자인 시·군의 실·국 협의와 심의과정과 승인가관인 시·도의 실·국 협의와 심의과정이 중복되므로 이를 통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입안자와 승인권자의 일괄 협의 또는 승인가관으로 통합하든지, 입안자의 실·국 협의 및 심의단계를 생략하고 승인가관의 실·국 협의와 심의단계를 시행할 경우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지침의 투명성

제고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인해 골프장이 산지에 주로 입지하는 경향이 많다. 산지에서 입지를 선정할 경우 골프코스의 조성으로 인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야 한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사전환경성 검토의 법정 협의기간은 30일이며(10일 연장 가능), 서류의 미비로 인하여 보완될 경우 협의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협의기간의 연장은 주로 사업자가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절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간을 단축하기를 원하며, 환경성 검토도 거쳐야 하는 하나의 행정절차로만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검토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서 자연환경분야의 작성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입지관련 기준을 법제화하여 골프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고 작성지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입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황자료를 준비할 경우 입안자료 제출 전에 적어도 4개월에 해당하는 충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골프장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단계에서는 골프장 예정부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고시된 상태이므로 입지결정 등 골프장 부지의 적절성과 관련된 검토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여부는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명확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이

것을 뒷받침해 주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지의 적정성과 자연친화적인 골프장 건설을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편람(환경부, 2004)에 수록된 검토기준은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개발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산지관리법 등 타 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기술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므로 기준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화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해결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전환경성 검토업무 편람에 의한 입지관련 검토시 개발사업 시행으로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아래 (1), (2)의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입지기준으로 명시하여 작성지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법령에 명시된 골프장 입지 선정시 환경관련 검토기준은 문화관광부 고시 또는 권 등(2002)을 참조한다.

(1) 자연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식생 해당)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지역의 경우는 산림의 녹지자연도가 7등급 이상인 지역)
- 법적보호 동·식물의 개체와 군락 또는 서식지가 존재할 경우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으로서 20도 이상 급경사지역이 사업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산 정상 및 급경사지역으로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
-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급경사의 산지에 입지할 경우 30도 이상인 지역이 절

반 정도 분포함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에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기준은 산지의 훼손에 따른 경사각 및 자연생태계의 양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골프장의 경우 경관의 가장자리(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를 주로 차지하는 20도 이상(30도, 40도 등 포함됨)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생태계 측면에서 동물의 이동 흔적이 현저한 지역으로 산림축 및 자연생태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 주변에 보존을 요하는 지역과 생태적으로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 용수공급 및 청정수계의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유사한 대체 수계가 주변에 없을 경우
- 지형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2) 주변에 골프장이 밀집한 경우

- 동일 수계를 중심으로 골프장이 밀집한 경우: 용인시 기흥CC 일원
- 산의 능선상에 밀집하여 생태계를 단절하는 경우: 뉴스프링빌CC, 백암비스타CC, 덕평CC

**골프장 설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현행 골프장 코스설계 기준은 아래 내용과 같이 경직성이 있으므로 대중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 설계에 제한요인이 될 수 있으며, 회원제와 대중골프장을 동시에 설계할 경우 소요되는 면적이 크므로 적절한 입지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long, middle, short 코스 조합을 반드시 고려(middle 홀 3개 이상 겹치지 않게, 적정 숫자의 long 홀을 반드시 설치 등)

- 홀간 거리, 홀의 구배, 홀 사이의 간격을 고려
  - 골퍼들의 게임 성적, 취향, 경제성 위주로 설계
  - 18홀 이상 멋있는 골프장을 설계하려는 욕구
  - 토지구입비를 공사비의 1/6 정도로 맞춤
- 2) 현재의 골프설계 기준으로는 국내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인 골프장을 설계하기가 어려우므로 이용자의 선호와 수준에 맞추어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경기용)골프장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코스설계기준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골프장 부지가 산지일 경우 가용부지매입을 충분히 할 수 없다. 골프장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구입비가 증가하므로 면적제한을 철폐하더라도 충분한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우므로 환경친화적 골프코스 배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 개선사항**

- 1) 환경친화적 골프장 건설을 유도한다.
  - 홀 규모가 같을 경우 부지면적을 많이 확보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함
  - 유희농지 등 평탄지를 활용토록 유도
  - 산지 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완화
- 2)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다.
  - 지역별 적정 입지에 대해 환경적으로 유리한 후보지(예, 1-2개/시·군)에 골프장 허용
  - 시군별 기준 쿼터제로 할 경우, 평탄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농지를 활용할 경우, 산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성비용을 상당량 경감할 수 있음
  - 환경훼손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밀집화 계획을 제한
  - 지자체경계(능선경계)를 중심으로 밀집되

- 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역 안배 및 균형 입지 조정 기능이 필요함
- 3) 대중골프장 일반화를 유도한다.
    - 대중골프장의 경우 입지를 우선 배정토록 정책적으로 배려
  - 4) 골프장 총량제 도입에 있어 신중한 분석이 필요함. 외국과의 비교에 있어 GNP, 인구수 등의 요소 비교와 함께 골프인구, 골프사용료, 국토의 지형적 특성(총면적 대비 산지비율), 골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예를 들면 해외골프 여행경비와 골프장 건설비용 및 사용비용 등을 비교한다.

**맺음말**

국내의 골프장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는 크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자에게는 복잡한 절차일 수 있지만 두 절차는 입지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의 저감대책 마련이라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절차 상 사전환경성 검토에서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논란이 있지만 법적 검토기간은 실제 30~40일로 전체 행정절차의 약 1/8 수준이다. 특히 골프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환경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30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다른지만 미국의 경우 draft의 검토기간이 45일(EPA, 1969)로 정해져 있다.

현재 골프장의 입지와 관련된 자연환경 분야의 기준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편람에 명시되어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다.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준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투명하게 제도화

될 필요가 있다(국무조정실, 2004).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골프장이 가능한 면적은 국토의 환경을 고려할 때 협소하며 제한된 생태계에 집중적인 영향이 가해지므로 훼손의 속도가 빠르고 그 정도가 크다. 따라서 골프장 증설에 대한 요구를 급하게 해소하려고 하기보다 적절한 입지, 적당한 숫자, 자연친화적인 방법을 보다 신중히 연구하여 전략적인 방향을 제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토지를 개발하는 한 형태로서 골프장을 간주할 경우, 즉 골프코스가 적절한 장소에 입지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되고, 설계에 맞게 시공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도록 관리될 경우 훌륭한 토지이용의 예가 될 것이며, 아울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유지하는 생태계 측면에서도 가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희귀종이나 야생보호종들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해 준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입지를 선정하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1) 토지이용변경이 가능한지, 2)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3) 사업지구의 생태적인 원 상태를 보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한 후 긍정적인 판단을 가질 때 개발을 결정해야 한다. 개발을 결정한 후 적절한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선정 그 자체가 중요한 첫 단계이며 개발을 위한 설계와, 시공과 운영의 모든 계획들에 환경적인 측면을 결합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공사 후 특별한 형태의 서식지를 요구하는 희귀종은 그 입지에서 함께 사라질지 모른다. 보통 개발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설계자나 시공자가 입지를 평가한 결과를 참조한다. 따라서 골프코스 개발자, 설계자, 건설자는 그 부지의 특징들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골프코스 개발자와 건설자는 이 전에 인간의 간섭이 있었던 지

역에 골프코스를 개발할 것을 모든 경우에 고려해야 한다. 훼손된 땅을 복원하고, 생물 서식지를 만들고, 녹화를 할 경우 경제성 문제가 크지만 사회와 환경의 이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다. 설계자는 입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예상하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원형보존 구간은 어떻게 조성하는지, 어떻게 하면 덜 훼손하고, 덜 비싸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므로 보다 지속적인 형태를 지양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어디에 골프코스를 만들 것인지 정해지면 설계자나 시공자들이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사항들이 많다. 첫째, 골프코스는 토지와 더불어 설계되어야 하지, 그 위에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코스의 설계는 지형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둘째, 코스는 부지의 생태계를 명확히 이해한 후 설계되어야 한다. 자연 서식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해당 지역의 고유한 식물을 선정하여 조경에 이용한다. 경관만 고려하여 식물을 선택할 경우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에 적합한 잔디를 선택해야 한다. 토양과 기후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스트레스에 잘 견디는 종이나 품종을 선택한다. 다섯째, 생물다양성을 극대화하고 서식지 회복을 위해 많은 구간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예, 원형보존 구간). 또한 더 많은 종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서식지 통로들로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

골프코스가 만들어 질 경우 주민들의 관심은 엄격한 골프장 관리와 화학물질의 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수질과 물사용에 초점이 가게 된다. 때문에 이용자와 관리자의 골프장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골프코스만 돌보기보다 코스가 아닌 지역에 야생 서식지를 만들고 복원하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프코스의 1차적 기능은 골프게임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안전, 경기의 속도, 공 분실, 이용자들의 기대 등의 이슈가 중요하다. 서식지와 자연경관의 증가는 비용의 절감으로 귀결되고 이익금은 서식지 보존계획에 재투자될 수 있으며 코스의 환경적인 image도 좋아 진다. 때문에 골프게임의 본질을 보존하고 미래의 골프산업이 번창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골프코스의 자연경관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며 야생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교통부.

권영한·김지영·노태호·송영일·박재홍·전영철. 2002. 골프장 건설시 환경영향 및 평가방안. KEI.

권영한·노태호·이성진·박재홍·심명호. 2003. 골프장 운영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KEI.

국무조정실. 2004.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사례,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pp. 95-136.

문화관광부. 2002. 체육시설현황,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관광부.

산림청. 산지관리법, 산림청.

환경부. 2004.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 환경부.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EPA. 1969.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